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30호

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승인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94호(2020.9.24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고시된 성북구 길음동 535-8번지 외 7필지 길음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(2025. 3. 6.) 심의를 거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약칭: 전통시장법) 제38조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3월 13일
서울특별시

I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 유예 승인

가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및 범위 등

구분	구역명칭	위치	면적 (㎡)	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일	비고
기정	길음시장 시장정비구역	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-8번지 외 7필지	10,470.0	2020. 9. 24.	

나. 시장정비사업 시행자

- 1) 명 칭 : 길음시장정비사업조합
-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36-12, 3층

다. 실효 유예기간 : 2023. 9. 25. ~ 2025. 9. 24. (2년)

- 사유 : 건축, 교통 및 소방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신청 준비 중에 있으나, 사업추진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이행에 절대적 기간이 부족하고,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「전통시장법」 제3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를 승인함

II. 사업추진계획 결정도

